

1. 개정이유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을 산정하여 그 총액을 부과대상 개시시점 주택가격 총액에 합산하도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33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격 평가 및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면서 하위법령 위임조문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문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5. 00. ~ 0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제5항”을 “영 제6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제7항”을 “영 제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6조제5항”을 “영 제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6조제7항”을 “영 제6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1.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생략)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 6조제7항에 따라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가액에 계산이 틀렸거나 잘못 기록한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1. 영 제6조제6항-----

2. (현행과 같음)

[illegible]